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